

##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- 55호

###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·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,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.

2005년 5월 24일

산업자원부장관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·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,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바이오디젤”이라 함은 식물성 油脂(쌀겨, 폐식용유, 대두유, 유채유 등)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脂肪酸 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.5% 이상인 것을 말한다.
- “바이오디젤 혼합유”(이하 “BD20”이라 함)라 함은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(이하 “경유”라 한다) 80%와 바이오디젤 20%를 혼합하여, 경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.
- “지정주유소”라 함은 BD20을 지정된 경유사용차량에 주입·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주유소를 말한다.

**제3조(품질 기준)** 바이오디젤(100%)과 BD20의 품질기

준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(시범보급지역)**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BD20의 시범보급을 위하여,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
②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“수도권(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)·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전지역”을 BD20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한다.  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자가 정비시설을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바이오디젤 또는 BD20을 공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시범보급대상 권장차량)** 시범보급기간 중 BD20 권장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(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,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한다)으로 한다.

**제6조(시범보급기간)** BD20의 시범보급기간은 2002년 5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7조(시범보급 참여 기업)** BD20의 시범보급에 참여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,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정부공인시험기관(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)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 제품에 대한 배기가스 및 차량시험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자(이하 “생산업자”라 함)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.

**제8조(지정주유소의 지정 관리 등)**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시범보급지역내의 주유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,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범보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·관리한다.

② 지정주유소는 BD20 저장탱크 및 판매주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, “BD20 시범보급 주유소” 표시를 풀과 주유기애 표시해야 한다.

③ 지정주유소는 BD20의 판매가격을 “석유류 가격표 시제 등 실시요령”(산업자원부 고시)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④ 지정주유소는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구입 및 BD20 판매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,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해야 한다.

**제9조(품질검사)** ① 생산업자는 제조·판매하고자 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바이오디젤 또는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(보고 및 검사)**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생산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바이오디젤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지정의 취소 등)**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**제12조(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)**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(매연단속 적발 포함)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종전의 시범보급사업 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산업자 및 BD20 판매주유소는 본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③ (고시폐지)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-109호 및 제2004-57호는 2005년 5월 25일부터 폐지한다. ☺